

#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72
----------	----

제출년월일 : 2006. 11. 3.

제 출 자 : 대전광역시교육감

## 1. 제안이유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개정(2005. 3. 24.)으로 수업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징수금액(안 제2조)

-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특성화중학교·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학교·각종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

### 나. 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안 제3조)

- 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다. 징수방법(안 제4조)

-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라. 징수기일(안 제5조)

- 수업료 징수기일은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 전으로 할 수 없으나,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함.

#### **마. 수업료 등의 반환(안 제6조)**

- 과오납된 수업료 및 입학금의 금액은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

#### **바. 공고 등(안 제7조)**

- 수업료 등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공고 하도록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라. 관련 부서간 합의여부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06. 9. 19. ~ '06. 10. 9./ 제출된 의견 없음

##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유치원(기본 보조금을 지원받는 유치원은 제외한다) · 초등학교 · 중학교(「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 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한다) · 고등학교(「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동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한다) · 각종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3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⑤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조 (징수방법)** 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의하여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5조 (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기 또는 당해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퇴학처분을 당한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학교를 자퇴한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공고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수업료 분할 징수표(제4조 제1항 관련)**

기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반기		하반기	
일자	3.1~5.31	6.1~8.31	9.1~11.30	12.1~익년 2월말

[별표2]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제6조 제3항 관련)**

반환사유발생일	반 환 액	비 고
1분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	입학금 또는 수업료 전액	
1분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 이후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참고사항]

# 관 계 법령

### ■ 유아교육법

제25조 (교육비용 등) ①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대상 유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 여부
  3. 당해 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 여부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 초·중등교육법

- 제10조 (수업료등)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